

서울시교육청 자치법규·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자치법규·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매뉴얼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보완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매뉴얼은 이러한 학생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작성해야 할 관련 양식의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보다 수월하고, 학생인권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학생인권영향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의견이나 문의 사항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목 차

1. 학생인권영향평가 안내	4
2.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7
절차	7
평가지표 및 해설	9
자체진단서 작성 요령	12
자체진단서 작성례	14
후속과정	16
3. 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18
절차	18
평가지표 및 해설	20
자체진단서 작성 요령	23
자체진단서 작성례	25
후속과정	28
4. 작성시 참고 자료	30
<서울시교육청 조례-학생인권조례 연관표>	30
<학생인권 권리영역별 학생인권조례 조항>	34
5. 양식	35

제1장 학생인권영향평가 안내

☑ 평가아닌 평가제도

-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의 제반 활동의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 학생인권 보호와 차별방지라는 목적으로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 담당자의 성장과 함께 나아가는 제도

- 서울시교육청의 담당자들이 학생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는 담당자들이 학생인권에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만큼 나아간다.
- 제시되는 지표 및 질문은 일반적이라면,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상에 대한 파악이나 고민하게 되는 질문은 담당자의 경험에 근거한다.
- 학생인권영향평가부서는 단지 이러한 담당자들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고민을 학생인권에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주업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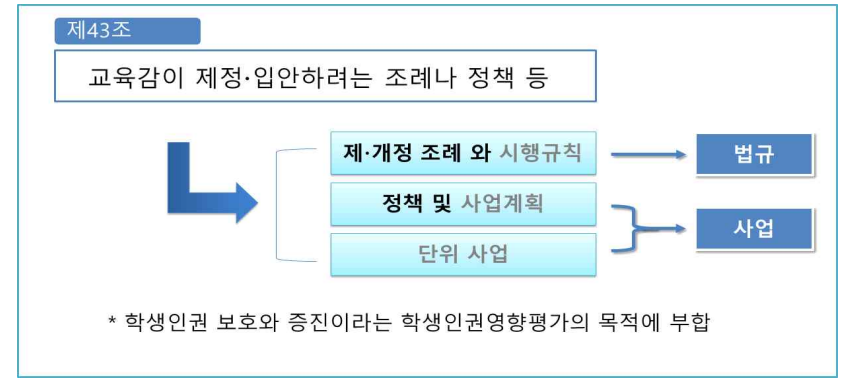
☑ 학생인권영향평가의 두 가지 기둥

- ‘학생은 아동·청소년이다’ 그리고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이다’ 라는 두 가지 명제에서 학생의 위치를 보여준다. 즉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학습과 성장의 단계라는 점이다.
- 학생인권도 이러한 두 가지 면을 이루고 있어, 안전과 보호, 그리고 성장과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레짐과 국내 교육레짐을 대표하며, 이러한 학생에 대한 두 가지 가치가 결합되어있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도 크게 두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UN아동권리협약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이다. 이 두가지 축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매뉴얼도 이 두 근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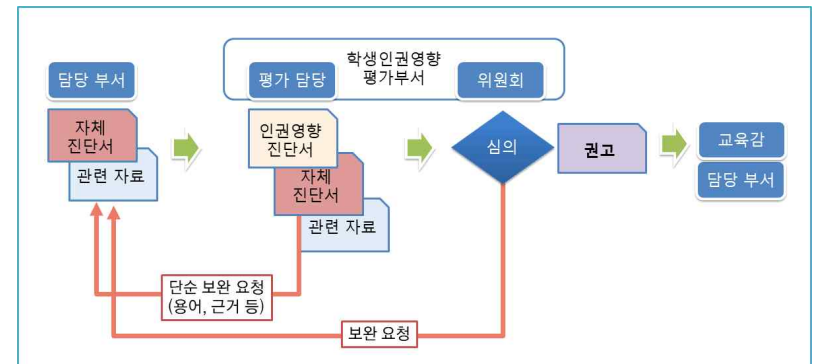
☑ 학생인권영향평가 대상

-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자치법규’와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학생인권영향평가 절차

- 학생인권영향평가의 기본적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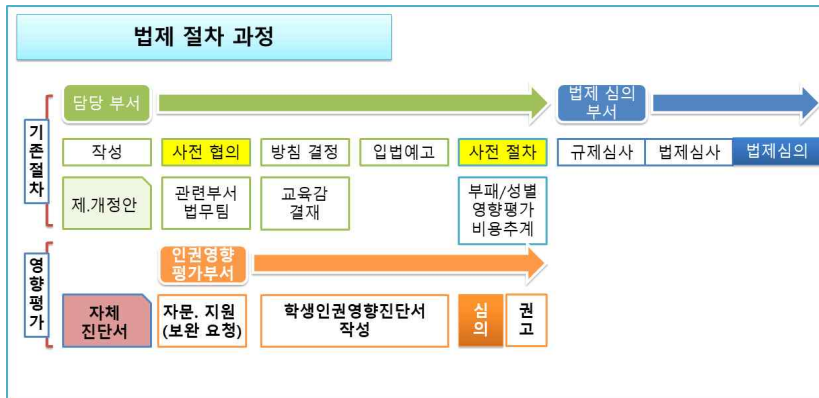
제2장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1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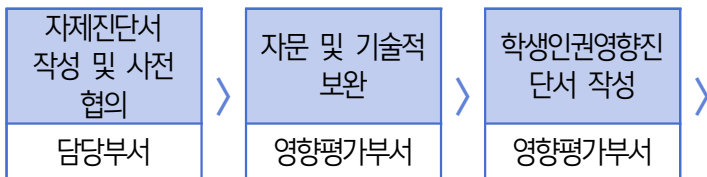
• 학생인권영향평가 대상

교육감이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의 조례와 시행규칙

☑ 학생인권영향평가 절차 (법제절차과정과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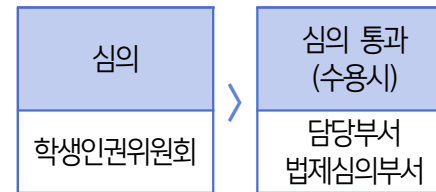


☑ 학생인권영향평가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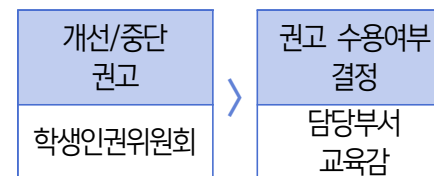
- 사전협의기간중, 담당부서에서 법제관련 문서와 더불어,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진단서를 작성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 영향평가부서에 제출한다.
- 영향평가부서는 각종 영향평가심의 절차에 가기 전에, 학생인권에 관련된 전문적 지원을 통해, 해당 법규의 내용 보완을 사전에 지원한다.
- 영향평가부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하여 학생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수용시



- 해당 사안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요소가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통과 의견을 담당부서와 법제심의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불수용시



-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거나 인권 침해나 차별이 심각하여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리를 담당부서와 교육감에게 개선 또는 중단의견으로 서면 권고한다.

2 평가지표 및 해설

☑ 학생인권조례 주요 영역 평가

평가항목	평가 내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키는가 • 학생간의 충돌을 완화시키는가 •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는가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학습을 돕는가 • 정규교육과정의 활동을 촉진시키는가 • 학생이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가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용모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가 • 학생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 학생의 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가 •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가 •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가정을 지원하는가

-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 표시는 질문당 답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긍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높음
 부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낮음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 없음
 긍정적/부정적인 답변이 같이 있으면 > 다소 있음
- 해당 항목에 대한 보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참여 등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 내용
총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와 부합되는가 (해당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연관표 참고)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제.개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 의견 청취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정보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한가 • 법규내용을 설명하는 초등학생용 자료가 별도로 제공되는가 •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내용이 전달되었는가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제.개정으로 학생간 차별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가 • 해당 법규 제.개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가

-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 표시는 질문당 답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긍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높음
 부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낮음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 없음
 긍정적/부정적인 답변이 같이 있으면 > 다소 있음

- 단, 참여와 정보접근의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부 긍정적인 경우에만 ‘하였음’에 표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는 ‘없음’에 표시한다. 즉, ‘없음’은 해당 문항에 대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해당 항목에 대한 보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의 비례원칙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 내용
목적성	• 해당 조례의 목적이 정당한가
방법	• 법규에서 구성된 방식이 위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인가
최소침해	• 다른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 여러 방안중 해당 안이 학생인권침해 가능성이 가장 적은가
균형	• 법규에서 제한하게 되는 학생 권리가, 교육적 공익에 비해 크지 않은가

- 해당 항목별 하나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예’ / ‘아니오’ 라는 답변을 표시한다.

3 자체진단서 작성 요령

☑ 관련 학생인권 조항

- 제4장 참고자료에 제시된 [서울시교육청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연관표]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법규에 관련된 학생인권조례를 적는다.

예시) 복지(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차별(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책무성과 체계에 관련된 경우, ‘책무성과 체계 관련’이라고 적는다.

예시) 책무성과 체계 관련

☑ 학생인권영향 수준

- 법규안을 학생인권에 미치는 침해와 차별적 요소를 중심으로 영향을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표시한다.

해당 법규가 학생인권과 관련없다면 > 없음

해당 법규가 학생인권에 영향이 적다면 > 낮음

해당 법규가 학생인권에 영향을 다소 준다면 > 다소 있음

해당 법규가 학생인권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 높음

☑ 평가 지표

- 2. 평가지표와 해설의 항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 첨부 자료

- 법제심의과정에 요청되는 자료의 복사본을 한부씩 첨부하여 제출한다.

예시) 입법이유서, 입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련자료 등

4 자체진단서 작성례

2018년 4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실시·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을 상정하여 작성한 예시임.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작성 부서	부서	참여협력담당관	☎
	담당자	***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실시·운영에 관한 조례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
관련된 학생인권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조항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열거하시오. 부록 참고: 서울시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연관성 분석표 책무성과 체계에 관련성을 가짐.		
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학생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세요.			
학생인권 영향수준	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이 전반적인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은 어떠한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높음
평가지표	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될 경우, 아래 영역별로 학생에게 미칠 영향의 수준이 어떠한지 점검하세요.		
	영역	주요 내용	수준
	안전	폭력, 위험,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성취	학생의 자기계발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자유	학생 개인 및 학생 집단의 표현, 양심, 자치활동, 사생활의 자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건강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복지	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지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는지 점검하세요.		
충돌	학생인권조례의 조항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참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하였음
정보 접근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서 학생들에게까지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하였음
차별	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장애·성적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지 않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본 조례안이 인권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목적	조례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방법	조례의 방법에 의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소 침해	① 동일한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② 작성)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방법 중 조례의 방법이 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가?	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균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교육적 공익에 비하여 학생 개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진 않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첨부 자료		

1. 입법이유서
2. 입법안
3. 신·구조문 대비표
4. 관련 참고 자료

5 후속 과정

담당 부서 지원 (사전 협의과정 및 기본방침 결정 기간)

- 담당부서의 자체진단서 제출에 따라, 학생인권영향평가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지원을 진행한다.
 - ✓ 해당 법규에 사용된 용어의 보완
: 인권에 기반한 개념 및 용어 사용 (예: 보호자)
 - : 쉬운 법률/개념 용어 사용
 - ✓ 해당 법규에서 단순한 기술적 보완
: 적용대상에서의 차별적 요소
 - :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 등

학생인권영향진단서 작성 (기본방침 결정/ 입법예고 기간)

- 30일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법규에 대한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하여, 학생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와 상호 확인 및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 학생인권영향진단서는 UN아동권리협약 및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기초하는 지표를 통합적 구성하였으며, 자치법규 및 사업에서 공통의 양식 사용한다.

- ✓ 0단계: 단순 용어/기술적 점검
- ✓ 1단계: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최우선 원칙, 차별, 참여, 책무성

☑ 학생인권영향평가 심의 및 권고 (사전절차 기간)

- 법제심의 전 단계인 사전절차 기간에 심의 및 권고안을 구성한다.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기간과 연동

❖ 심의결과 (통과 의견)

-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요소가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통과 의견을 담당부서와 법제심의부서에 서면통보한다.

❖ 심의결과 (개선/중단 의견)

-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 수용되지 않거나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여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리를 담당부서와 교육감에게 개선 또는 중단 의견으로 서면 권고한다.

제3장 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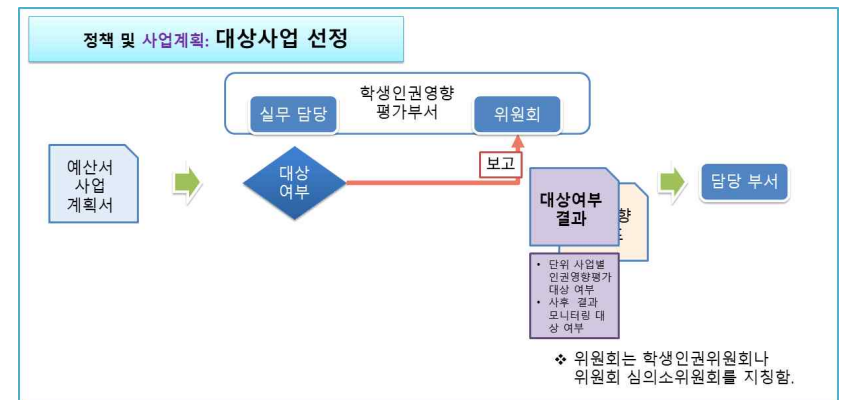
1 절차

☑ 학생인권영향평가 대상

학생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영향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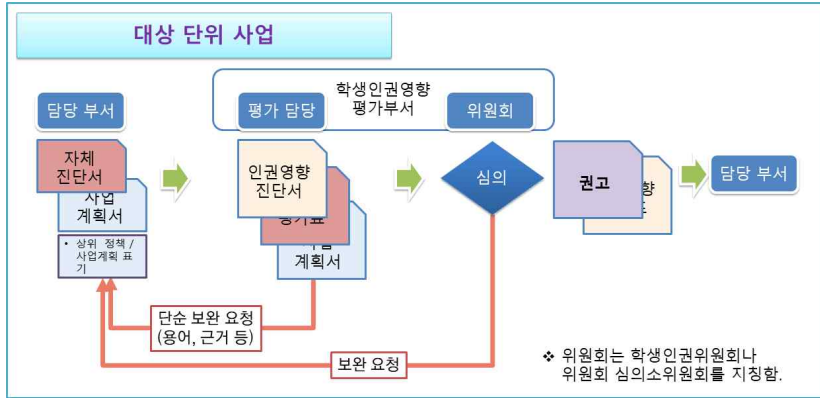
☑ 학생인권영향평가 절차

⊙ 1단계: 대상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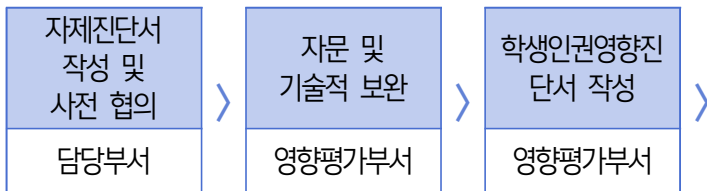
- 학생인권위원회가 연간 사업계획(예산서 포함)을 검토하여, 차기년도 대상 사업 선정하고 공고한다.

◎ 2단계: 대상사업별 절차



- 1단계에서 선정된 사업의 경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진행한다.

☑ 학생인권영향평가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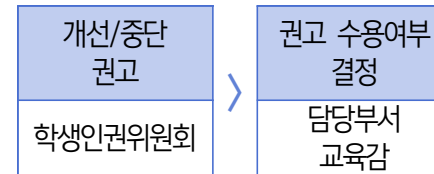
- 사전협의기간중,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진단서를 작성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 영향평가부서에 제출한다.
- 영향평가부서는 각종 영향평가심의 절차에 가기 전에, 학생인권에 관련된 전문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 내용의 보완을 사전 지원한다.

- 영향평가부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하여 학생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수용시

- 해당 사안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요소가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통과 의견을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불수용시



-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거나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여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리를 담당부서와 교육감에게 개선 또는 중단의견으로 서면 권고한다.

2 평가지표 및 해설

☑ [1단계] 학생인권영향 수준 점검 (자치법규와 동일)

-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 표시는 질문당 답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긍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높은
 부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낮음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 없음
 긍정적/부정적인 답변이 같이 있으면 > 다소 있음

평가항목	평가 내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키는가 학생간의 충돌을 완화시키는가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는가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학습을 돕는가 정규교육과정의 활동을 촉진시키는가 학생이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가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용모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학생의 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가정을 지원하는가

- 해당 항목에 대한 보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 점검

평가항목	평가 내용
최우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권리나 이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는가. 교사나 행정의 편의성보다 학생의 권리에 우선하였는가.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학생들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소수자 학생들 중 해당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해당 사업에 경제적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있는가?
참여	* 해당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는다.
차별	* 해당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는다

-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수준 표시는 질문당 답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긍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그렇다
 부정적인 답변이 1개 이상 > 아니다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 해당없음
 긍정적/부정적인 답변이 같이 있으면 > 검토요청

- 단, 참여와 차별의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는다.

예) ...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절차가 있으면 > 그렇다
 절차가 없으면 > 아니다
 절차가 없으나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 해당없음
 해당 절차의 여부가 고민되거나 기타 사항 > 검토요청

- 해당 항목에 대한 보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체진단서 작성 요령

☑ 사업 관련 일반 사항

- 사업의 근거
사업계획의 정책 - 단위 사업 - 해당 사업명을 적는다.
: 선정 사업 목록을 참고한다.
예시) 정책: 학생활동지원
단위: 특별활동지원
사업명: 탈북학생 교육지원
- 사업의 연속성
해당사업이 새로이 시작되는 경우 ‘신규’, 그 외에는 ‘기존’에 표시한다.
-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적는다. 성과지표 등을 반영한다.
예시) 탈북학생의 1대1 멘토링 운영을 통해 개인별 학습/진로를 지원한다.
- 대상
해당 사업의 대상을 적는다.
예시) 탈북학생 희망학생
- 총예산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별 예산 (1년)를 적는다.
- 주요 일정
해당 사업에서 주요 행사 및 학생참여 일정을 적는다.

☑ [1단계] 학생인권영향 수준

- 학생인권영향수준
사업계획안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침해와 차별적 요소를 중심으로 영향을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표시한다.

해당 계획이 학생인권과 관련 없다면 > 없음
해당 계획이 학생인권에 영향이 적다면 > 낮음
해당 계획이 학생인권에 영향을 다소 준다면 > 다소 있음
해당 계획이 학생인권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 높음
- 평가지표
2. 평가지표와 해설의 항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 [2단계] 학생인권영향

- 2. 평가지표와 해설의 항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 첨부 자료

-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자체진단서 작성례

2018년 진행중인 ‘2018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중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기반 확대 사업을 기초로 작성한 예시로서, ‘2기 백서 -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중 [교복입은 시민] 중 ‘학생자치활동 강화 및 내실화’ 를 결합하였다.

사업단위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작성 부서	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담당자	***	☑
정책	학생자치 강화 ‘교복입은 시민’		단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명	학생자치 활성화 기반 확대		
	☑ 기존 □ 신규		
목표	학생회 전용 공간 확보 학생자치활동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대상	공립 중.고등학교		
총예산	총예산 93백만원 학생회실 구축 및 운영 지원 13개교 * 5,000천원 = 65백만원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 운영 4개교 * 7,000천원 = 28백만원		
주요 일정	- 주요 행사 및 회의 등을 포함한 일정을 대략적으로 기술하세요.		

[1단계] 본 계획의 학생인권영향 수준을 점검하세요.

학생인권 영향수준	본 계획이 학생인권에 미칠 영향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없음 □ 낮음 □ 다소 있음 ☑ 높음
평가지표	본 계획이 실행될 경우, 아래 영역별로 학생에게 미칠 영향의 수준이 어떠한지 점검하시오.

영역	주요 내용	수준
안전	폭력, 위험,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	☑ 없음 □ 낮음 □ 다소 있음 □ 높음
성취	학생의 자기계발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	□ 없음 □ 낮음 □ 다소 있음 ☑ 높음
자유	학생 개인 및 학생 집단의 표현, 양심, 자치활동, 사생활의 자유	□ 없음 □ 낮음 □ 다소 있음 ☑ 높음
건강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 없음 □ 낮음 □ 다소 있음 □ 높음
복지	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지원	없음 □ 낮음 ☑ 다소 있음 □ 높음

[2단계] 본 계획이 학생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세요.

최우선 원칙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3조] 위에 명시된 학생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검토요청
차별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 위에 열거된, 혹은 열거되지 않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검토요청
참여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한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인가? 학교단위 사업으로 개별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없다.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20조]

	<p>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의견청취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있다면 의견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 -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의견 청취를 학생회 및 학생참여단을 통해 진행한다. - 사업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교별로 배포한다.</p>
	<p>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 의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있다면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및 후속 내용을 제안자 개인 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한다.</p>
	<p>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있다면 권리구제절차는 어떠한가?</p>
책무성	<p>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p>
	<p>본 계획의 작성,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열거하시오. 학생회, 학교의 장, 교직원</p>
	<p>본 계획의 작성,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에 열거된, 혹은 열거되지 않은 관계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려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고려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가? - 2018년에는 학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 - 해당 학교장 및 교사들에 대한 교육 지원</p>

5 후속 과정

담당 부서 지원 (사전 협의과정 및 기본방침 결정 기간)

- 담당부서의 자체진단서 제출에 따라, 학생인권영향평가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지원을 진행한다.
 -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용어의 보완
: 인권에 기반한 개념 및 용어 사용 (예: 보호자)
 - : 쉬운 법률/개념 용어 사용
 - ✓ 해당 사업에서 단순한 기술적 보완
: 적용대상에서의 차별적 요소
 - :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 등

학생인권영향진단서 작성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

- 매년 사업을 선정할 경우, 제시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예비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하여 둔다.
- 담당부서에서 자체진단서와 세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앞서 작성한 [예비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참고하여,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하여 학생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와 상호

확인 및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 학생인권영향진단서는 UN아동권리협약 및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기초하는 지표를 통합적 구성하였으며, 자치법규 및 사업에서 공통의 양식 사용한다.

- ✓ 0단계: 단순 용어/기술적 점검
- ✓ 1단계: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최우선 원칙, 차별, 참여, 책무성

☑ 학생인권영향평가 심의 및 권고 (학생인권위원회)

-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기초하여, 심의 및 권고안을 구성한다.
: [시행전 검토사항]에 연동하여 진행한다.

❖ 심의결과 (통과 의견)

-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요소가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통과 의견을 담당부서에 서면통보한다.

❖ 심의결과 (개선/중단 의견)

-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 수용되지 않거나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여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리를 담당부서와 교육감에게 개선 또는 중단 의견으로 서면 권고한다.

제4장 자체진단서 작성시 참고 자료

1 조례 - 학생인권조례 연관표

서울시교육청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연관성 분석표 (2018. 6. 30 기준)

번호	법규명	담당부서	관련 정도	학생인권조례 연관 권리영역(조항)	책무성과 체계
1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2		○
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2	3(8) 1(5) 10(28)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생생활교육과	2	2(6) 7(21) 9	
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시설안전과	2	2(7) 7(22) 3(8)	
5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학생생활교육과	2	3(8) 7(21) 1(5)	
6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학생생활교육과	2	7(21) 3(8)	
7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2	9(26) 3(8) 10(28)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2	9(26) 3(8)	
9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정책안전기획관	1		○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체육건강과	2	10(28) 3(8) 7(21)	
1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2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초등교육과	2	1(5) 3(8)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학생생활교육과	2	7(22) 7(24)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체육건강과	0		
1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1	1(5) 3(8)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교육정보화과	2	7(22) 4(15) 4(14)	
17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과	1	7(22) 3(11) 1(5)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학생생활교육과	2	3(8) 3(9)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체육건강과	2	7(22) 7(24)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1	7(21) 3(8)	
21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건강과	1	7(22) 3(11) 1(5)	
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2	9	○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2	1(5) 3(8) 7(21)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정보화과	1	5(17)	
2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진로직업교육과	2	3(8) 3(9)	
26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교육혁신과	2	3(8) 6(20)	

27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학생생활교육과	1	1(5)	10(28)				
28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교육시설안전과	2	7(22)	3(10)				
2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교육혁신과	2	3(11)					
3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교육시설안전과	2	1(5)	7(22)	10(28)			
3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1						○
3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학생생활교육과	2	3(9)	7(21)	10(28)			
3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정책안전기획관	2	2(7)	7(22)				
3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예산담당관	2	6(20)					
35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체육건강과	2	7(23)					
36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학교지원과	2	6(20)					
37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로법률상담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2	9(26)	9(27)				
38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등교육과	1	2(6)	2(7)				
39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유아교육과	1	1(5)	3(8)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총무과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체육건강과	1	7(22)	6(20)				○
4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1	7(21)					
4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1	1(5)					
44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진로직업교육과	1	3(8)	7(22)				
45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지원과	1	3(8)					
46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과	1	7(22)					
47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1	6(20)					○
4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교육혁신과	2	3(9)	6(20)	7(22)			
49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1	2(7)	7(22)				
50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대변인	1	6(20)					
5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참여협력담당관	1	7(22)	7(21)	1(5)			○
5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노사협력담당관	1	3(8)					○
53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체육건강과	1	7(22)	1(5)				
5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체육건강과	1	3(8)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총무과	1	4(15)	4(14)				○
56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평생교육과	1	3(8)	3(9)				
57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과	1	7(22)	3(8)	10(28)			
58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1	3(9)					○
59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대변인	1	1(5)	3(8)	10(28)			○
60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1	7(21)					○
61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1	6(20)					

62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예산담당관	0						○
63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중등교육과	0						
64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담당관	0						○
65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0						
6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교육재정과	0						
67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회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0						○
68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총무과	0						
69	서울특별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학교지원과	0						
70	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초등교육과	0						
7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0						○
7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물품관리 조례	교육재정과	0						
7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총무과	0						
74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총무과	0						
7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0						
76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총무과	0						
77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0						○
78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총무과	0						
79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0						
8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교육재정과	0						
8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0						
82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0						
8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총무과	0						
8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감사관	0						
85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총무과	0						
8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관	0						
8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노사협력담당관	0						
88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총무과	0						
89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노사협력담당관	0						
9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교육재정과	0						
91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0						
92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0						
93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예산담당관	0						
94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안전기획관	0						

95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노사협력담당관	0				
9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행정관리담당관	0				
97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유아교육과	1				○
9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학교지원과	0				
99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초등교육과	0				

법규별 학생인권조례권리영역은 ##(**)로 표시되어 있으며, ##는 해당 권리영역을, **는 해당 학생인권조례(권리)으로 정리하였다. 아래의 [학생인권 권리영역별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참고하라.

2 권리영역별 학생인권조례 조항

학생인권 권리영역별 학생인권조례 조항

권리영역	개별권리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2.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7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3. 교육에 관한 권리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제10조(휴식권) -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5.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8조(자치활동의 자유) -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 제24조(건강에 대한 권리)
8.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9.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0.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5장

관련 양식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작성 부서	부서		☐
	담당자		☑
자치법규명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관련된 학생인권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조항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열거하시오. 부록 참고: 서울시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연관성 분석표		

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학생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세요.

학생인권 영향수준	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이 전반적인 학생인권 미칠 영향의 수준은 어떠한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될 경우, 아래 영역별로 학생에게 미칠 영향의 수준이 어떠한지 점검하세요.		
평가지표	영역	주요 내용	수준
	안전	폭력, 위험,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성취	학생의 자기개발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자유	학생 개인 및 학생 집단의 표현, 양심, 자치활동, 사생활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건강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복지	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지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는지 점검하세요.		
충돌	학생인권조례의 조항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참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하였음
정보 접근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서 학생들에게까지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하였음
차별	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장애·성적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본 조례안이 인권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목적	조례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방법	조례의 방법에 의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소 침해	① 동일한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② 작성)	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방법 중 조례의 방법이 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가?	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균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교육적 공익에 비하여 학생 개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진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첨부 자료		

1. 입법이유서
2. 입법안
3. 신·구조문 대비표
4. 관련 참고 자료

사업단위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작성 부서	부서		☞
부서 담당자	담당자		☒
정책		단위	
사업명			

기존 신규

목표	
대상	
총예산	
주요 일정	- 주요 행사 및 회의 등을 포함한 일정을 대략적으로 기술하세요.

[1단계] 본 계획의 학생인권영향 수준을 점검하세요.

학생인권 영향수준	본 계획이 학생인권에 미칠 영향의 수준은 어떠한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평가지표	본 계획이 실행될 경우, 아래 영역별로 학생에게 미칠 영향의 수준이 어떠할지 점검하십시오.		
	영역	주요 내용	수준
	안전	폭력, 위험,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성취	학생의 자기계발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자유	학생 개인 및 학생 집단의 표현, 양심, 자치활동, 사생활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건강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복지	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지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다소 있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2단계] 본 계획이 학생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세요.

최우선 원칙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3조] 위에 명시된 학생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
차별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 위에 열거된, 혹은 열거되지 않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한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인가?
참여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20조] 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되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 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의견청취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 있다면 의견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

	<p>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 의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있다면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p>
	<p>본 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있다면 권리구제절차는 어떠한가?</p>
책무성	<p>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p> <p>본 계획의 작성, 실현,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열거하시오.</p>
	<p>본 계획의 작성, 실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에 열거된, 혹은 열거되지 않은 관계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려하였는가?</p> <p><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요청</p> <p>고려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가?</p>

서울시교육청 자치법규 · 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매뉴얼

발행처 서울시교육청
 구 성 평화인권교육센터

